

3. 외국인 투자촉진법(안) 입법예고

재정경제부공고 제1998-91호 1998. 6. 13

주요내용

- 가. 법 명칭 및 목적
 - 외국인투자 유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.
- 나. 외국인투자 절차의 간소화
 - 외국인투자 신고 수리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하고 외자도착보고 제도 및 신고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 등을 폐지하여 외국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함.
- 다. 조세감면의 확대
 -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과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사업으로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.
- 라.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 확대
 - 지방세 감면대상에 등록세를 포함하며, 감면기간을 8년으로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15년의 범위내에서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연장된 범위내에서 감면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.
- 마. 국·공유재산의 대부 확대
 -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·공유재산을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, 국·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.
- 바.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
 -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지원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,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,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가 예

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사. 외국인 투자 관련 인·허가 절차의 간소화

-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·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를 민원의 성격 및 처리기관에 따라 몇 개의 민원군(群)으로 분류하고, 그 중 주요민원이 처리되는 경우 나머지 민원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보며, 민원처리기간 경과시 자동적으로 인·허가된 것으로 간주함.

아.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 내에 외국인 투자 진흥센터를 설치

-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 내에 외국인 투자 진흥센터를 설치하여 투자상담 단계에서 사업개시 시점까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·허가 처리의 대행 등 종합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함.

자. 외국인 투자지역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

- 대규모 외국인 투자의 효과적인 유치를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과 관련된 개발비용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는 국가산업 단지에 준하여 지원함.

차. 외국인 투자위원회 설치·운영

- 외국인 투자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각부의 장관 및 시·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위원회(위원장·재정경제부 장관)를 설치함.

카.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폐지

-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되, 공공차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시기까지 그 효력을 유지함.

주택회보